

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

금 융 감 독 원

우150-743 /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/ 전화 02-3145-7761 / 전송 3145-7769
처리부서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팀장 장석일 담당자 선임조사역 최진혁

문서번호 회계제도 -00185

시행일자 2014.04.29

수 신 재지정 신청 회사 대표이사

참 조 회계담당 부서장

사본수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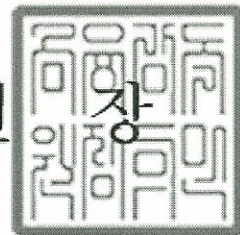
제 목 감사인 재지정 통보(회사)

1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외감법')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귀사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감사인 재지정 내용을 통보합니다.

2. 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외감법 제4조의4에 따라 회사는 별도의 감사인 선임보고가 필요치 않습니다.

불 임 감사인 재지정 명세. 끝.

금 융 감 독 원



[붙임]

감사인 재지정 명세

지정대상회사	주소	지정사업연도	지정해제 감사인	재지정 감사인
동양시멘트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, 서관 16층(수표동, 시그니처)	2014.1.1.~12.31.	한영	삼덕